#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60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한민수・임오경・이연희

정일영 · 서영교 · 송옥주

박균택・박상혁・황 희

황정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(從量制)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(이하 "종량제 봉투등"으로 한다)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.

이에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(안 제14조제9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 봉투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2.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 4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	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
~ ⑧ (생 략)	~ ⑧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⑨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
	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자에게 종량제 봉투등을 해당
	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
	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
	<u>있다.</u>
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
	따른 수급자
	2.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
	연금 수급자
	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
	른 지원대상자
	4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
	<u>받는 장애인</u>
	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
	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<u>⑨·⑩</u> (생 략)	<u>⑩</u> ⋅ <u>⑪</u> (현행 제9항 및 제10항
	과 같음)